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제 1 장 총칙

제 3 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

 회사에 적용되는 경쟁관련 법령, 규정 등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공정거래 관련 법규

 공정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 보호법률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제반 국내법규를 말한다.

3. 경쟁당국

 공정거래 관련법규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말한다.

4. 자율준수프로그램

자율준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소와 실행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5. 자율준수관리자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제 2 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제 1 절 자율준수관리자

제 4 조【선임과 해임】

회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자율준수관리자의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5 조【권 한】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 조사권
2.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요구권
3.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자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보고권

4.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시정요구권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제 6 조【의 무】

자율준수관리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2.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운영할 의무

제 7 조【직 무】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관리

2. 자율준수와 관련된 계획 수립

3.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4.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분석과 개선, 시정 및 예방조치 강구

5.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6. 공정거래 관련 법률 및 자율준수와 관련된 관련부서 임직원 교육

7. 자율준수행동강령의 제정 및 운영

8. 자율준수 활동결과에 대한 기록유지

9. 자율준수 활동 및 사안의 대표이사 및 이사회 보고

10. 경쟁당국 등과의 협조 및 지원

11.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8 조【인사상 불이익 부과금지】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집행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9 조【회사의 지원】

1.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2.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 10 조【전담부서】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며, 회사전체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을 주관하는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2 절 임직원

제 11 조【의 무】

1.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자문 또는 협의를 받아야 한다.
3. 임직원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제 12 조【자율준수 편람】

1.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법규의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지침인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2. 자율준수편람은 회사의 조직과 특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신속하게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13 조【모니터링】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의 자율준수실태 등에 대한 점검, 조사
2. 자율준수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각 부서별로 작성한 각종 체크리스트의 검토 및 확인
3. 자율준수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보고서, 각종 자료의 검토 및 확인
4. 임직원의 자문, 사전검증과 내부신고제도, 내부통제시스템에 의한 사안 등의 검토 확인

제 14 조【교육의 실시】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 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에게는 연 2 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내용은 자율준수 규정의 주요내용이 변경되거나, 공정거래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임직원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로 한다.
3. 자율준수관리자는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 있다.
4. 자율준수교육에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15 조【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법규 준수여부 점검결과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하되, 필요시 본 규정 이외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6 조【제재의 절차 및 제재 기준】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피해 정도

가. 위반의 내용

나. 위반의 횟수

다. 위반으로 인한 회사의 피해

라. 사회적 물의의 정도

마. 위반상태의 해소의 정도

2. 위반행위의 행위 태양

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준수를 태만히 한 경우

나. 자율준수관리자가 요구한 보고서나 자료의 제출을 지연 또는 태만히 하는 경우

다. 모니터링 수행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라. 자율준수관리자가 행한 명령이나 지시사항 또는 시정조치의 이행을 지연 또는 태만히 하는 경우

마. 자율준수관리자로부터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받고도 계속해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소지가 커 향후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을 예상하고도 자율준수관리자와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사. 자율준수관리자가 요구한 보고서나 자료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제 1 항의 기준을 고려하여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다음 각 호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서면 경고 (당사자 및 팀장 등 관리 책임이 있는 자)
2. 시정조치 명령
3. 경위서 (또는 사실 관계 확인서)제출
4. 백서 작성
5. 인사위원회 회부

③ 임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율준수관리자는 행위자가 소속된 부서장에게 교육 이수 명령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자율준수관리자로부터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를 받은 경우

2.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소지가 커 향후 자율준수관리자가 자체 특별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기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무수행 등으로 제재조치 이외에 별도의 특별교육이 필요하다고 자율준수관리자가 판단한 경우

④ 제 3 항의 교육은 법위반 총괄 팀장(또는 부서장)의 책임 하에 전담부서의 교육과는 별도로 자체 교육계획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교육결과보고서 및 교육평가자료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 17 조【인센티브 등】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였다고 평가된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회사에 건의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서는 시정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1. 사업부문별 자율준수 모범 부서 또는 부서원

2.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주관부서의 우수 부서원

② 제 1 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평가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지침 또는 별도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른다.

제 18 조【문서관리】

1. 자율준수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아래 분류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2.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작성 보관되어야 한다.
3. 자율준수 활동에 관한 모든 문서는 정확하게 기록되고 최신의 정보를 담아야 한다.

제 19 조【관리대상 문서】

주요 관리 대상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이사의 자율준수의지 선언문과 통지문
2. 자율준수관리자에 대한 선임문서
3.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및 배포 입증문서
4. 모니터링 관련 문서

5.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관련 문서

6. 자율준수 교육 결과보고서

7. 기타 공정위에 보고·제출한 자료 중 주요자료 등

제 20 조【제정·개정】

① 회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제정한 사규 및 각종 매뉴얼 등은 본 규정에 입각하여 작성·운영되어야 한다.

② 회사의 사규 및 매뉴얼을 소관하는 부서는 그 사규 및 매뉴얼의 제정 또는 개정시 본 규정에 적합한 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상충시에는 자율준수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 4 장 기타

제 21 조【운영성과 평가】

1.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운영성과 평가는 자율준수관리자가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22 조【공 시】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용상황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상 공시하고, 홈페이지에 자진게시하여야 한다.

제 23 조【경쟁당국과의 관계】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교환, 의사소통 등을 원활하게 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 24 조【위임】

자율준수관리자는 본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제정,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 본 규정은 2008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2. 삭제

3.(자문) 공정거래 관련법규 관련 업무를 해석하거나 이행함에 있어서 의문이 생기면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자율준수위원회와 상의하고 자문을 받아야 한다.

4.(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 자율준수규정은 회사의 관련 규정보다 우선한다.

5. 본 규정은 2008 년 9 월 1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12 년 6 월 19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14 년 3 월 26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20년 1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